2021. 6. 30. 개정

직불카드 회원약관

제 1 조 (회원)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직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발급)
① 카드는 예금주의 신청이 있을 때 발급해 드립니다.
② 카드발급 신청시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3 조 (카드의 관리)
①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며, 회원은 발급받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제수수료 등)
은행은 소정의 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① 카드의 비밀번호는 은행에 카드신청시 반드시 4자리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입·출금기"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카드의 입·출금기 이용)
① 카드는 은행 및 국내의 직불카드 취급은행(이하 "국내은행"이라 한다)이 설치한 CD/ATM기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직불카드 결제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한다)의 현금 입지급, 잔액조회, 계좌이체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거래시마다 은행 또는 국내은행은 CD/ATM기에 의해 소정의 거래 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급청구서 또는 기명 날인된 수표로 갈음하며,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드립니다.
③ CD/ATM기의 이용시간, 1회이용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 횟수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국내 직불카드가맹점 이용)
① 회원이 국내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직불카드 가맹점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어디에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물품 또는 용역의 취소, 반품은 거래 당일 중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로부터 이미 출금하였던 대금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거래 취소시 직불카드 이용가능시간 경과 등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국외이용)
① 회원이 국외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은행과 제휴한 해외 가맹점 어디에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해외의 지정장소(은행 및 입·출금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전 각항의 이용시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카드의 이용한도)
① 국내거래의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국외거래의 경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제8조 제③항에 의거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410호(2021.04.22)

제 10 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거래 당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② 제7조 제②항의 거래(취소·반품)시 은행은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출금되었던 대금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③ 카드의 이용명세는 통장(결제계좌)의 기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국외에서 현지통화로 이용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수반한 모든 수수료는 원화로 결제됩니다. 이때 원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1 조 (카드의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입력 횟수 초과
2. 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 제한 계좌
5.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제 12 조 (카드의 분실·도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면책)
① 은행은 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고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회원이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③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14 조 (변경사항의 통지)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회원자격정지 및 탈회)
①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자격정지 적용일로부터 5영업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사유로 결제계좌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탈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①항의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를 은행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약관변경 승인 등)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9조(약관의 변경)에 따릅니다.

제 17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18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은행과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410호(2021.04.22)